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회)	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강정애 (국가보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1. 의결주문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보훈특별고용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공·사기업체(公·私企業體)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추천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선택하여 고용할 것을 명하도록 하고 있는바,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채용시험 실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보기간을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

취업지원 대상자인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에 대한 채용신체검사 합격판정을 종합병원 외에 병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6. 21. ~ 7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제1호 중 “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일반군무원(이하 “일반직공무원등”이라 한다)”을 “일반군무원”으로, “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”을 “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”으로 한다.

제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과 일반군무원”이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8의2에 따른 일반직공무원과 「군무원인사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일반군무원(이하 “일반직공무원등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

제5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채용시험 실시 등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54조제1항 중 “「의료법」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”을 “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”으로 한다.

별표 8 제1호의 연 지급액란 중 “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76조의2 제1호”를 “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76조의3제1호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훈특별고용 취업지원 대상자 통보에 관한 적용례) 제5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통보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46조(취업지원의 신청) 법 제36조	제46조(취업지원의 신청) -----			
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이력서를 첨부한 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-----			

1. 법 제37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및 <u>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일반군무원(이하 “일반직공무원등”이라 한다)</u> 특별채용 대상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: <u>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</u>	1. -----			
	----- <u>일반군무원</u> -----			

	----- <u>일반직공무원</u>			
	<u>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</u> -----			
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			
제47조(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) ①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서 “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</u> ”이란 「 <u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</u> 」 별표 8의2에 따른 <u>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.</u>	제47조(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) ①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서 “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과 일반군무원</u> ”이란 「 <u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</u> 」 별표 8의2에 따른 <u>일반직공무원과 「군무원인사법 시행령」 별표</u>		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	
연 락 처	(044) 202 - 5651